



: 2016-12-06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

판 결

사 건 2016가단2622 기타(금전)
원 고 A
피 고 ■■■시
변 론 종 결 2016. 10. 14.
판 결 선 고 2016. 10. 2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9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망 B(2011. 8. 8. 사망)는 원고의 모(母)이고, 망 C(1997. 5. 21. 사망)은 원고의 형(兄)이다.



나.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B와 C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 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다.

순번	토지의 표시	명의인	등기의 종류 및 등기일	등기원인
1	■■■■시 D 답 198㎡	B	소유권이전등기 1986. 9. 16.	1986. 9. 13. 매매
2	■■■■시 E 답 149㎡	B		
3	■■■■시 F 답 1,779㎡	B		
4	■■■■시 G 답 278㎡	B		
5	■■■■시 H 답 6평	C	소유권보존등기 1965. 6. 30.	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, 7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다. 그로 인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,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재산상 손해 507,000원과 위자료 492,000원 합계 999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소유명의를 아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

오히려,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(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),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등기부등본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(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),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① 원고는 B 명의의 토지를 원고 자신이 매수한 사실을 자인하였다(원고의 2016. 6. 7.자 준비서면).

② 원고는 C이 사망한 이후 C 명의의 토지를 상속인 I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매수하였다(갑 제3호증).

③ B와 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사망할 때까지 서울에서 거주하였다.

④ 반면,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,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서 이를 관리해 왔다고 진술하였다.

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재산세 고지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번, 면적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(갑 제1호증), 원고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의 재산세 고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.

[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, 즉 원고 명의로 고치지 못한 탓을 피고에게 돌리고 있으나, 그에 관한 권리의무는 과세기관에 불과한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.]



: 2016-12-06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진환